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5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0.

임 미 연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 임미연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재정지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그 기능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의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임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5105
----------	----------

발의연월일: 2025. 10. 10.

발 의 자: 임미연, 권숙자, 김해철
박왕규, 황국주, 최홍린
고명욱, 강한곤, 도하석
김기열

1.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1.5.)」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구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안 제4조)
- 라.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붙임자료 참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3조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서구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재난안전제품 사용 촉진 및 확산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난안전분야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⑤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의 지정·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재난안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⑤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진흥단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의 이해
2.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
3. 재난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실시 계획을 수립할 것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할 것
4.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적 중 재난안전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과 그 지원시설(제4호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 재난안전산업 수행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물을 설치할 것
5. 기존 진흥시설 및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기관과의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것
6. 조직 구성, 재원 조달, 장비 활용, 시설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진흥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